對內外秘

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

2018. 6. 5.

1. 검토배경

▣ **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'법관인사제도' 학술대회 개최 의결**

- 1. 24. 국제인권법연구회 **운영위원회** 결과
  - 1. 15.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
  - 1. 19.까지 예정되어 있던 인권법연구회 '연내 행사주제 및 일정'에 관한 의견수렴기간 종료 후 개최함으로써 **'의견수렴결과 이의 없다'는 명분 확보**
  - 참석대상자 12명 중 11명 참석 ⇨ 회장의 반대에도 **나머지 10명 전원이 개최 의견 固守**
- **3. 25.(토)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**

▣ **인사모가 기획 중인 세부 주제**

- **①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**
- **② 법관인사 이원화의 방향**
- **③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(+ 김○○ 부장이 사법부 예산 관련 연구 중)**

▣ **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⇨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**

- 법관 사회 내부의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, 외부 기관과의 공동행사를 고집 ⇨ 결국 **일부 언론 및 정치 세력을 활용한 공론화 시도** 예상
- 탄핵심판, 조기 대선, 후임 대법원장 청문회 등 **격동의 시기**를 앞두고 있음 ⇨ 관련 대응방안을 **사전에 마련**하여 둘 필요성이 큼

2. 대응방향 및 착안사항

▣ 1 **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됨**

● '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'의 부당성 부각 필요

- 인사제도를 논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거나 자제하라는 것이 아님,

● 행정처가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그와 같이 법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

- 인사 이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음

▣ 2 **설득·대응의 주타깃은 인사모 주도 법관이 아닌 인권법 일반 회원**

● 인사모 주도세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간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함 ⇨ **일반 법관을 설득할 논리 개발** 필요

- 인사모 주도 법관들에 대한 설득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까움

- 사법행정 관련 민감한 주제일수록 연구회 일반 법관들과 인사모 주도 세력간 유대감은 의외로 미약할 가능성 있음 ⇨ 약한 연결고리 해체 가능

● 사법부 연구회 **공식활동이 아닌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은 파급력이 현저히 감소**됨 ⇨ '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'으로 방어 가능

- **인사모와 인적구성이 유사한 우리법연구회**가 2015. 5.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개최하였으나,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고 행정처의 부담도 거의 없었음

▣ 3 **인사제도 세미나 관련 대책과 인사모 관련 대책 모두 검토 필요**

● 부적절한 세미나 개최 자체의 방지가 우선적 과제

● 인사모가 유사한 인적구성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계속 활동하는 한 동일한 위험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음

- 인사모의 구성 및 활동방향 자체에 관한 强·溫 대응방안 마련 필요함

▣ 4 어느 정도의 파열음은 불가피함 ⇨ 오히려 내부 파열음을 통해 인사모 주도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파열음을 용인할 필요

● 행정처가 직접 나서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

● 결국 인권법 소속 일반 법관과 인사모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, 경계감을 형성함으로써 인사모 활동을 위축시켜야 함 ⇨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파열음 내지 불편한 분위기 형성 불가피

- 파열음은 논리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각 촉발시켜야 함

3. 구체적 대응방안

가. [단기 방안] 인사제도 관련 외부 공동 세미나 대응 중심

▣ [파열음 1]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기

● 설립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전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문제제기 가능

☑ 2011. 6. 제출한 <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허가 요청서>상의 활동계획

▶ 북한인권문제의 대두와 탈북자의 증가,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판증가, 인권문제의 재판쟁점화에 따라 이를 연구하는 전국적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필요함 ⇨ 명칭 그대로 "국제적" "인권"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함

☑ 2011. 8. 설립 및 회원가입 안내 공지문상의 활동계획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·응답

▶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 성과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

▶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심포지엄, 외부강연 등 학술모임의 개최

● 법관 상대 설득 논리

- 인사제도 세미나라는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인사모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필요성 문제제기 및 설득

- ① <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>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, ②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함

-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어느 정도 설득력 있음

- 인사모는 법관 인사제도 논의가 국제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
  - 법관 인사제도 ⇢ 사법의 독립, 양질의 재판, 법치주의와 연관 ⇢ 국민의 인권 보호와 연관된다는 논리
- **대안 제시 필요**
  - ① **인사제도 관련 연구회를 신설**하거나, **적어도** 연구회가 아닌 ② **인사모 자체 명의로 개최**할 수 있음 ⇨ 연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 가능
  -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인사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 있음 ⇨ **굳이 규정에 반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 사용을 고집**하는 것은 의문이고, **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운영할 책무가 있는 회장으로서는 문제제기 불가피**
- **※ 문제제기의 주체**
  - **현 회장이 제기함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**임
  - 현 회장 입장에서는 공론화가 부담될 수 있음 ⇨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조 탈퇴할 선배 법관 등 **지원군의 사전 확보가 필요**할 수 있음
  - 현 회장이 문제제기 전면에 나서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일 경우 **대안적 역할을 할 법관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**됨

> ▶ **김○○ 법원장 중재 가능성 ⇨ 소극**
> - 국제인권법연구회 **초대 회장이자 인사모 주도 세력에 막강한 영향력** ⇨ 조기 대선으로 **정권교체될 경우 6월경 후임 대법관 제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**이 매우 높을 것임
> - 이러한 경우 대법관 **제청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 및 부담 등을 감안하여 민감한 주제 관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언론의 주목받는 것을 회피하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으나,**
> - 김○○ 법원장은 오히려 **위 세미나를 지지**하고 있음 ⇨ 진보 성향 후배 법관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음 + 위 세미나 관련 중재 역할 기대 난망

- **[법관들 반응 예상] 논리적으로 인사모 주장이 박약함을 이해**하면서도 **심정적으로는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 불발에 거부감**을 가질 수 있음
  - 특히 인사모측에서 '학문, 토론의 자유 억압', '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탄압' 등과 같은 **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반격**할 수 있음
  - 문제제기, 공론화 과정에서 **공격적이지 않고, 논리적이면서 조심스러운 방식이 요구됨 + 아래 정서적 파열음 촉발 방안과 병행 시도**되어야 함

● 일반 법관 회원들의 반응에 따른 후속조치

- ① <u>다수 회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</u> ⇨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

- ② **부적절하지 않다**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⇨ 회장은 **'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'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** (이 경우 아래 파열음 ②항에 따른 추가 조치 계속 시행)

- ③ 부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분위기인 경우 회장의 대응카드 ⇨ 아래에서 검토하는 '전문분야연구회 활동 **공식 평가기구에 이 세미나의 적정성 판단을 의뢰하자' 고 제안하여 국면전환**할 여지 있음

☑ **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방안 검토 ⇨ 신중**

▶ **근거규정 '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예규' 제9조**

- ①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**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**를 둔다.

- ④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.

▶ **위 ②항의 "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" 작성 권한에 연구회 활동 범위 내지 논의 주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**

▶ **위원회 활용 방식**

- **회장이 '법관 인사제도 관련 외부공동세미나 개최(나아가 인사모 활동 자체)가 위 예규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목적 및 연구회 회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해석 의뢰하자'고 제안**하여 국면 전환

- **공식 규정에 근거한 공식 위원회의 회신 내지 의견 개진이므로, 연구회 회원들 입장에서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음**

▶ **활용 여부 검토**

- **법리적으로는** 목적 범위를 넘어섬이 **명백한 유권해석 및 회신**으로서 사후적으로 문제될 내용의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돌파 차원에서(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반 법관들에게 인사모 활동의 규정 위반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는 측면에서) 위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여지도 있으나,

- **법원행정처가 논란의 중심**에 서게 되고, 인사제도 세미나 저지 시도의 배후에 행정처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

- 정책결정의 영역이나, **신중할 필요**가 있음

▣ **[파열음 ②]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 ⇨ 특정 연구회의 후신, 정치적 목적 하에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음**

●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되고, 일반 회원들이 위와 같은 분위기를 **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** 하여야 함

- 우리법연구회 등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아니라, **무언가 '문제 있고, 논란 있는 연구회' 라는 인식**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법관들의 동요 예상

- 현재는 **사법부 내 '주류 중의 주류' 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회원**으로 포진 ⇨ 젊은 법관들이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

● [PROCESS] ① **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논란** 있는 연구회 ⇢ ② 주류 성향 **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** ⇢ ③ **다수의 법관들이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 형성**

● ① 규정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논란 촉발

-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회장의 의지 및 설득력이 관건임

● **② 선배 법관들의 대거 탈퇴**

- **현 회장의 사퇴 및 탈퇴가 전제되어야 명분 및 효과**를 높일 수 있음

- **고법부장**(성○○, 이○○, 김○○, 유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이○○ 부장 등 12명), **심의관 출신 지법부장**(윤○○, 함○○, 오○○, 김○○, 전○○ 등)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

-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, **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분산 탈퇴하되, 다수가 탈퇴할 필요**가 있음

● **③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**

-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**연구회 활동 관련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 있음**

- 인권법연구회가 그 **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더 큰 동요** 예상됨

▶ 이○○ 부장판사(○○기)의 발언 음미
- 사적 대화 내용이므로 중략
▶ 이○○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나, 이번 세미나 관련하여 개최 저지 역할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

▣ [충격 완화책 ①] 주제 선별 후 개최

● 인사모가 준비 중인 위 **3가지 주제 중 상대적으로 수용가능한 주제로 논의가 한정**되도록 하는 방안

-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를 더 이상 막기 어려운 경우의 플랜 B임

● 법관인사 **이원화,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⇨ 수용 불가**

- **법관 사회에서 폭발력이 큰 이슈**이고, 현 대법원장님 및 차기 **대법원장님에게 큰 부담**이 되는 이슈임
- **사법부 내부의 법관 인사제도**에 대하여까지 외부 세력의 목소리가 개입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됨
- 부득이한 경우 법관인사 이원화 문제를 기**존에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"고법부장 승진제도 타당성" 주제로 바꿔 논의하는 정도는 수용 여지**

● **대법원 구성 다양화 ⇨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**

-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이슈 ⇨ ① 새로운 주제 아니고, ② 법관들 호응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, ③ 인사모 활동에 특정 성향 정치권의 이미지가 오버랩될 것임
- 특히 **법관 내부에서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** 인사모와 일반 법관 사회와 분리 효과도 있을 수 있음
- 외부에 '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화 필요성 제기' 라는 명분을 주는 등 **어느 정도의 타격 예상됨 ⇨ 세미나 개최를 막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**함

▣ [충격 완화책 ②] 개최 시기 조율

● 인사모가 추진 중인 **3월(3. 25.) 개최가 상대적으로 안전**함

- 현재 3월 탄핵결정 및 5월 조기대선 유력 ⇨ **탄핵결정과 대선정국 이슈가 다른 논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에 개최해야 주목도를 낮출 수** 있음

- 3월 개최 시 **준비기간 부족**으로 깊이 있는 논의 및 행사 구성도 어려울 것임

● 인사모 일부가 제안한 **6월 연기방안은 오히려 위험**함

- ① 조기 대선으로 인해 **법원 관련 공약이 대선 직후에 심층검토될 가능성** 있음 ⇨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에 민감한 주제로 개최할 경우 **신임 대통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** 있음

- ② 특히 야권 후보 대선 승리 시 **'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제기'를 명분으로** 내세워 **사법부 인사시스템 및 관행에 정권 차원에서 개입 시도할 우려**

- ③ 후임 대법원장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 ⇨ 사법부 내외에서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님을 **구시대·수구적 이미지로 규정짓고 차별화 시도할 위험성**

- ※ MB정권 초기 이○○ 대법원장님 관련 굴욕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

▣ [충격 완화책 ③] 최후 고려 수단 ⇨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

●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또는 별도의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를 통하여 **제도권 내에서 인사제도 논의의 장 제공**

- 2016년 상반기 **사법행정위원회의 선제적 출범으로 인사모의 비판적 논의가 상당 기간 위축**되었던 선례

● 최후의 수단이므로, 인사모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고려함이 상당함

- **급진적인 논의결과**가 도출될 경우 대법원장님의 8월 정기인사 시나 차기 대법원장님 인사권 행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

- **법원문화개선위 발족시 유사한 우려 있었으나, 원만히 마무리한 노하우** 있음 ⇨ 위원회의 경우 **의제 설정권이 행정처에 있는 한 극단적 사태를 예방**할 여지 있는 것은 사실이나, **인사제도의 민감성에 비추어 낙관하기 어려움**

● 위원회 발족 시 **합리적인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검토 필요**

- ①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 등 **사법행정라인 주도하에 1차 의견수렴 절차(여과 기능)**, ② 전국 위원회도 위원을 다수로 하는 등 **선명성을 앞세운 일부 견해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** 정밀한 검토 필요함

나. [중기 방안]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

▣ 1 **모든 전문분야연구회(커뮤니티)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⇨ ① 중복가입 해소 + ② 연구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**

● 모든 연구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, **모든 연구회를 상대로 준수 요구**

- 국제인권법연구회, 인사모 등 **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 또는 규정 준수 요구를 할 경우 강한 반발** 예상

- 특정 법관들에 대한 **압박 논란을 피하고 규정 미준수에 본능적 거부감이 있는 법관들의 통상적인 성향을 활용**

● ① 중복 가입 해소 요구

☑ 근거규정

▶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(회원)

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**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**. 다만, **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**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.

☑ 중복가입 금지의 취지

▶ 각 연구회에 예산 지원 시 가입회원수 등이 고려되는 점, 전문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 및 전문성 있는 동료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법관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목상 가입이나 무분별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

☑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 해소의 명분 충분함

▶ 위와 같은 중복금지 규정의 취지 존중될 필요 있음

▶ 현실적으로 중복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경우에만 해외방문, 회식 및 연수비 지원 등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음

-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커뮤니티 **회원 중 50%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** ⇨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

● ② 전문분야 연구범위 준수 요구

☑ 근거규정

▶ **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**

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**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**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. ⇨ **반대해석상 설립목적 위배시 설립허가 취소 가능**

▶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(커뮤니티의 폐쇄)

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**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**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**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**할 수 있다. ⇨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연구회의 코트넷 커뮤니티 폐쇄 가능

☑ 법관들 상대 목적 범위 준수 요구 명분 있음

▶ 예산 및 전산 자원을 지원받고 있고,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된 연구회가 설립목적의 범위를 준수함은 당연 ⇨ 정당한 규범임에도 부당하게 훼손된 규정의 규범력을 회복할 필요성

▶ 규정을 준수 중인 절대 다수 연구회와의 형평성

- 인사모 뿐만 아니라,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체가 국제인권과 무관한 경제민주화, 증세와 복지 등의 주제를 세미나에서 다뤄 옴

- 위와 같이 규정상 연구회 설립취소, 커뮤니티 폐쇄가 가능하나, 실제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(행정처가 논란의 중심 등)이 훨씬 크므로 신중할 필요

● 규정 준수 요구 방안의 장점

▶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들 상대로 규범력 회복 등의 명분 충분함

-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정,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충분함 ⇨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

- 법관들의 **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하는 데 대한 일각의 비판 및 논란을 우회할 수 있음**

▶ 2 행정처·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

- 특히 중복가입금지 해소 요구는 다소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므로, **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** 전산정보국장 명의 공지로 충분 ⇨ 그 공지의 기회에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자제 권유도 함께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

- 전반적으로 **정책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기존 규정 준수 및 집행 관련 문제**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, 그 시행에 **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**

-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도 크지 아니함

-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로 인하여 일부 법관들이 커뮤니티 **전문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**을 가질 수 있음 ⇨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 가능

☑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분석

▶ **명분 제시 가능**

- ① '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**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**이 법관들의 **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**이 된다고 판단하였다'

- ② '사법부의 **예산지원을 받는 이상** 그 **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**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'는 등의 명분 제시할 수 있음

▶ **오해 소지 차단 가능**

- 각급 **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**함으로써 '**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'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**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

- 지식광장 게재 독려는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가능

▶ **기대효과**

- ① **학술성과 공유**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,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,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

-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**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**

- ③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**인적 유대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는 연구회의 경우** 게시글 공개를 통해 '**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, 자부심 내지 이너 써클(Inner Circle)에 대한 소속·결속감'을 약화**시킬 수 있음

- ④ 특히 **인사모의 경우 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**됨으로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⇨ **'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'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**도 있음

-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, 이에 대한 **모니터링 용이**해짐 (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)

▣ 2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

● ① 2017년 **전문분야연구회 예산** 대폭 증액(7억원 ⇢ 14억원)으로 예산 및 전산 편의 지원에 따른 **실질적인 관리·평가 시스템 재정립 예정**

- 국제인권법연구회 뿐만 아니라, 목적 외 활동 금지를 비롯한 여러 **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든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 관련 불이익** 부과

-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 예상

● ② **전산 지원 제한**

- 연구회 전체 활동에 대하여 제재하기 보다는 **인사모 게시글에 대하여만 열람제한 조치 등으로 일반 회원과 분리 제재** 가능

● ③ 인사모 활동 지속할 경우 **전문분야 국제화연수 혜택도 박탈** 가능

- **인사모로 인해 국제인권법 일반 회원 법관들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인사모측도 상당한 부담**을 느낄 것임

● 극단적으로는 규정 위반 활동에 대하여 징계 여부 검토 가능하나, 위험성이 너무 큼

▣ **3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**

● **인권 이슈의 독점 해소**

- **보편적 인권 관련 이슈**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

-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**법관들** 상당수는 '국제인권' 이 아닌 **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** ⇨ **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**은 **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**하는 기능

● **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**

- 국제인권법연구회는 **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**하고 있음

- 사법부 내 다른 기구(**헌법연구회, 젠더법연구회, 사법정책연구원 등**)이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⇨ **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** 가능

- **ex) 탈북민, 외국인 노동자, 아시아인권재판소 등 관련 대형 행사(특별 예산 지원 가능) 및 언론 보도**

4. 로드맵(안)

시기	방안 예시
1월 하순	◆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

	‘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**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**하고, 인권법연구회 명의가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,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’ -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
2월 초순	◆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⇨ **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** -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 -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
2월 중순	◆ (이하 협의 불발시) **회장등 사퇴 및 탈퇴** -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 -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
인사이동 후 3월 초순	◆ 전정국장 명의 **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** - **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**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,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 - **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**해주시기 바람 -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**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**됨 ◆ 헌법연구회, 젠더법연구회,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**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**
3월 중순	◆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 -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
3월 하순	◆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-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, 고립화 분위기 조성
5월	◆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-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 ◆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-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